

북한주민 직접 사용·관리 변경허가서

재산관리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직업	전화번호
	주소	

북한주민	성명	성별
	생년월일	직업
	주소	

기존 직접 사용·관리 허가 일자 및 내용

직접 사용·관리 변경 허가 내용

변경허가 조건

「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·관리를 위와 같이 변경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법무부장관

